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48회 임시회 (2021. 4. 19.)

2021년도 제1회 **기획재정국**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최 국 모

목 차

I	제안개요	1
II	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	2
	① 총괄 현황	2
	② 세입 편성	2
	③ 세출 편성	2
III	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	3
	① 총괄 현황	3
	② 일반회계 현황	4
IV	검토의견	5

검 토 보 고 서

I 제안 개요

안 건 명

- 2021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

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2021년 4월 5일(월), 마포구청장

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

- 2021년 4월 7일(수)

위원회 회부근거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60조제1항

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(추가경정예산)
-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II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

1 총괄 현황

(단위: 천 원)

구 분	추경예산액	기정액	증감액	비 고
합 계	760,480,230	753,451,230	7,029,000	0.93%
일 반 회 계	676,169,937	669,140,937	7,029,000	1.05%
특 별 회 계	84,310,293	84,310,293	0	0%
의 료 급 여	485,200	485,200	0	0%
마 포 농 수 산 물	7,503,649	7,503,649	0	0%
주 차 장	68,493,979	68,493,979	0	0%
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	6,577,465	6,577,465	0	0%
건 축 안 전	1,250,000	1,250,000	0	0%

-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0억 2,900만 원(0.93%)이 증가한 7,604억 8,023만 원임.
- ▶ 일반회계: 6,761억 6,993만 7천 원(70억 2,900만 원 증가)
 - ▶ 특별회계: 843억 1,029만 3천 원(변동 없음)

2 세입 편성

(단위: 천 원)

구 분	순세계잉여금	비 고
일 반 회 계	7,029,000	2020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 활용

※ 특별회계 세입 편성: 해당 없음

3 세출 편성

(단위: 천 원)

구 분	합 계	자체사업	재해·재난목적 예비비	비 고
일 반 회 계	7,029,000	6,134,950	894,050	

※ 특별회계 세출 편성: 해당 없음

III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

1 총괄 현황

1. 세입 현황

(단위: 천 원)

구 분	추경예산액	기정액	증감액	증감률
합 계	342,744,382	335,715,382	7,029,000	2.09%
일반회계	340,857,376	333,828,376	7,029,000	2.11%
특별회계	1,887,006	1,887,006	0	0%
주차장(징수과)	1,887,006	1,887,006	0	0%

○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은

- ▶ 기정예산액 대비 70억 2,900만 원 증가한 3,427억 4,438만 2천 원으로, 마포구 전체 예산규모(760,480,230천 원)의 45.07%를 차지하고 있음.

2. 세출 현황

(단위: 천 원)

구 분	추경예산액	기정액	증감액	증감률
합 계	11,925,403	11,031,353	894,050	8.10%
일반회계	11,186,756	10,292,706	894,050	8.69%
특별회계	738,647	738,647	0	0%
주차장(징수과)	738,647	738,647	0	0%

○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은

- ▶ 기정예산액 대비 8억 9,405만 원이 증가한 119억 2,540만 3천 원으로, 마포구 전체 예산규모(760,480,230천 원)의 1.57%를 차지하고 있음.

2 | 일반회계 현황

1. 세입 현황

(단위: 천 원)

구 분	추경예산액	기정액	증감액	증감률
기 획 재 정 국	340,857,376	333,828,376	7,029,000	2.11%
재 무 과	58,214,400	51,185,400	7,029,000	13.73%
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	52,629,000	45,600,000	7,029,000	15.41%
순 세 계 잉 여 금	52,629,000	45,600,000	7,029,000	15.41%

-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.11%인 70억 2,900만 원이 증가한 3,408억 5,737만 6천 원임.
 - ▶ 재무과 세입은 추경예산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70억 2,900만 원이 증가한 582억 1,440만 원임.

2. 세출 현황

(단위: 천 원)

구 분	추경예산액	기정액	증 감	증감률
합 계	11,186,756	10,292,706	894,050	8.69%
기 획 예 산 과	8,562,100	7,668,050	894,050	11.66%
재해·재난목적예비비	894,050	0	894,050	순증

-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111억 8,675만 6천 원으로, 기정예산액 102억 9,270만 6천 원 대비 8.69%에 해당하는 8억 9,405만 원 증가하였음.
 - ▶ 기획예산과 세출은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로 8억 9,405만 원을 편성함.
 - ※ 재난·재해목적예비비: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

IV 검토의견

■ 2021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의

- 일반회계 세입은 3,408억 5,73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,338억 2,837만 6천 원 대비 2.11%에 해당하는 70억 2,900만 원이 증액되었음.
- 일반회계 세출은 111억 8,675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 9,270만 6천 원 대비 8.69%에 해당하는 8억 9,405만 원이 증액되었음.
- 특별회계 세입·세출은 변동 없음.

■ 검토의견으로는

-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은 재난·재해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, 재난·재해목적예비비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¹⁾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제2항²⁾의 규정에 의해 편성되는 것으로, 코로나19 등 재난극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임.
-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고 이에 따른 음식점, 목욕업 등 소규모 자영업 매출이 급락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. 이러한 상황에서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에서는 사회적 재난 극복과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담은 세입·세출 예산 편성에

1) 제129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2) 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6. 9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
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고, 특히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입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.